I PARK DMC 가재울 아이파크

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문

구분	내용
대상 및 자격	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및 수도권(서울/경기/인천)거주 ② 혼인기간 7년 이내(혼인신고일 기준, 재혼 포함) ③ 「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충족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(140%)을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(3억3,100만원)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 이상 ⑥ 무주택세대구성원 ※ 단,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~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부부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. → 2018.12.11. 이전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 ※ 「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 제6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, 나머지 주택(우선공급에서 미 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)은 수도권 거주자(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)에게 공급합니다.

당첨자 선정기준 및 유의사항

구분	내용
공급기준	① 우선공급(50%) :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% (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20%) 이하인 자 ② 일반공급(20%) :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40% (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60%) 이하인 자 ③ 추첨공급(30%) : 공급 후 남은 물량(30%)은 ①, ②낙첨자 + 추첨제 청약자(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 충족자)에게 공급
경쟁 시 우선순위	-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[소득기준]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1순위 :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출산한 자녀가 있는 자(임신, 입양 포함) ※ 재혼일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, 출산, 입양 자녀의 경우만 해당 ※ 현재 배우자와 혼인신고일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도 포함 ② 2순위 : 무자녀 또는 2018.12.11. 이전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 경과한 자 -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(서울시)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② 미성년 자녀(태아 포함) 수가 많은 자 ※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·입양한 미성년 자녀(청약신청자의 전혼 자녀)를 포함하되,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. ※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(전혼 배우자와의 자녀)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(태아 포함)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

■ 유의사항

-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,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,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(양자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) 등으로 확인합니다.
-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소형·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.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 제9호 미적용)
- 기타 본 안내문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'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'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.

소득산정 기준

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·자산기준

공급유형			구분	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(2023년 적용)					
		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
소득 기준 구분	우선공급 (기준소득, 50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 이하	~6,509,452원	~7,622,056원	~8,040,492원	~8,701,639원	~9,362,786원	~10,023,933원
	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00% 초과 ~ 120% 이하	6,509,453원~ 7,811,342원	7,622,057원~ 9,146,467원	8,040,493원~ 9,648,590원	8,701,640원~ 10,441,967원	9,362,787원~ 11,235,343원	10,023,934원~ 12,028,720원
	일반공급 (상위소득, 20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 초과 ~ 140% 이하	6,509,453원~ 9,113,233원	7,622,057원~ 10,670,878원	8,040,493원~ 11,256,689원	8,701,640원~ 12,182,295원	9,362,787원~ 13,107,900원	10,023,934원~ 14,033,506원
	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20% 초과 ~ 160% 이하	7,811,343원~ 10,415,123원	9,146,468원~ 12,195,290원	9,648,591원~ 12,864,787원	10,441,968원~ 13,922,622원	11,235,344원~ 14,980,458원	12,028,721원~ 16,038,293원
소득기준 초과 / 자산기준 충족 (추첨제, 30%)		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	140%초과, 부동산가액 (3.31억원) 충족	9,113,234원~	10,670,879원~	11,256,690원~	12,182,296원~	13,107,901원~	14,033,507원~
	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60%초과, 부동산가액 (3.31억원) 충족	10,415,124원~	12,195,291원~	12,864,788원~	13,922,623원~	14,980,459원~	16,038,294원~

- 기준소득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% 초과시 일반공급 20%(상위소득)[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(월평균 소득기준 120% 초과~160% 이하)]을 선택하셔야 합니다.
- 상위소득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.
- 추 첨 제 :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(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%,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)은 초과하나,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(3.31억원) 이하에 해당하는 자

※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방법

-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
- (발급기관)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접속 등기열람/발급 〉 부동산 〉 "부동산 소유 현황"(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)
- 발급 시 (주민)등록번호 공개에 체크

※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청약신청자(세대주) 및 성년인 자(만 19세 이상)의 합산 소득입니다.
(단, 세대원의 실종 ·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)

※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÷근무월수를 말하며,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(21번) 및 근로 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,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,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,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
※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(임신 중인 태아 포함)으로 산정합니다.

※ 본 안내문은 청약자격과 관련한 간단한 내용만을 요약하였으며,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기재오류·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.)
※ 청약자격 미숙지,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표현한 것으로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거나, 청약신청전 입주자모집공고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